

-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 '13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소방방재청〉

1.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적용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를 대비한 방재기준 재설정 필요

■ 현 행

- 현행 설계기준은 과거 30년간 기상자료만을 확률·분석 적용함에 따라
 - 미래 기후변화 양상이 반영되지 못해 기록적인 폭우, 폭설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

■ 개 선

- 중앙본부장은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기후변화를 예측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적용토록 권고
 -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 기간별·지역별 강수량, 강풍, 강설, 해수면상승의 변화량 범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

■ 향후계획

-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적용 : '13.5월~
- 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13.12월까지

2. 방재신기술 인센티브 적용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배경

- 방재신기술 평가제도* 정착·활성화 및 관련 산업영역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신기술 지정 실적 미흡
 - * '06년부터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 운영, '12. 12월 현재 31건 지정(활용 282건, 1,357억)
- 소규모 업체의 방재신기술 판로 확대를 통해 관련 기술 발전 및 방재신기술 평가제도 활성화

■ 현 행

- 관련 법령*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연재해 저감사업 및 공사시 방재신기술의 활용에 대해 권고 수준임
 -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현행 방재신기술 지원은 신기술우선적용 권고, 자금지원, 입찰참가자격 PQ심사가점 부여 등에 국한

■ 개 선

- 조달청「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의 지정대상에 “방재신기술” 반영
- 각종 건설공사 입찰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가산점 부여(PQ심사)
 -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기술능력평가기준에 “방재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반영
 - ※ 나라장터(조달청)와 방재신기술 지정현황 및 활용실적 관리시스템 연동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의 “공공시설 복구단가”에 방재신기술 반영

■ 향후계획

- 방재신기술 나라장터 연동시스템 운영 : '13.1월~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절차 개선 (재해영향분석과)

■ 추진배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신청 후 사전검토에 상당기간 소요(최소 5~7월)됨에 따라 승인처리기한 장기화로 수립 저조
 - 수립 활성화를 위해 처리기한 단축 등의 승인절차 개선 필요
 - ※ '12.12.17 현재, 수립대상 158개 시·군 중 87개 수립완료(55%) 69개 수립 중

■ 주요내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추진
 - (종전) 승인신청 후 사전검토 실시
 - (개선) 승인신청 전 시·도 협의단계부터 사전검토를 병행 토록 하여 승인처리기간 약 3개월 단축

■ 그간 추진사항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계획 보고(11.27, 차장님)
-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안) 부패영향평가(11.30~12.4), 관계기관 의견조회(11.28~12.12), 심사의뢰(12.17)

정책정보

■ **향후계획**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안 심사 및 발령 : '12.12월말

[붙임] 승인처리절차 흐름도 개선 전·후 비교

현행		개선	
<지자체>	<소방방재청>	<지자체>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작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작성	
관련기관 협의, 주민 공청회 개최		관련기관 협의, 주민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수렴	사전검토 의뢰
시·도지사 협의		시·도지사 협의	전문가 사전검토, 관계부처 협의
계획안 수정·보완		계획안 수정·보완 (사전검토조치결과 포함)	
승인신청 (시·도 경우)		승인신청 (시·도 경우)	
사전검토 조치결과 작성	전문가 사전검토, 관계부처 협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정·보완	검토회의 개최 및 결과통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정·보완	검토회의 개최 및 결과통보
	최종 승인		최종 승인
공람·공고		공람·공고	
(소요기간) 6~9개월		(소요기간) 5~6개월	

4-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제도과)

■ 추진배경

- 국력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화재 근절 지시(대통령 '09.11.17)
 - 대형사고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방식 개선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실현 방안 강구(국가정책조정회의 '09.12.18)
 - 화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 내용

- 다중이용업주 자력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2개 업종, 191,871개소)
 - 보상범위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부상·재산상 손해 보상
- 다중이용업주의 의무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시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및 가입 표지 부착
- 보험회사의 의무
 - 보험계약 만료일 안내(2회), 계약 체결거부 금지의무 계약 해지 금지 의무
 - 화재배상책임보험외의 다른 보험의 가입을 강요하지 못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위반자 조치
 - 보험 미가입 영업주 : 과태료 부과, 인·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요청
 - 보험가입 거부, 임의계약 해지, 보험기간 만료 미통지 보험회사 : 과태료 부과

■ 법 시행일

- 신규 다중이용업주 : '13. 2. 23부터 보험 가입
 - ※ 150㎡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15. 2. 23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주 : '13.2.23~8.22까지 보험가입(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 ※ 150㎡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15. 2. 23 ~ 8. 22까지 가입

5-② 다중이용업소의 소파·의자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 추진배경

-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방염소파·의자의 도입 필요성 제기

정책정보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 개요

- 일 시 : 2012. 5. 5. 20:52~22:02(70분 소요)
- 장 소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15-3번지 3층/부산진소방서 5km
- 건물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지상6층/지하2층, 연면적 3,987.23㎡)
- 원 인 : 전기적 요인
- 피해현황 : 사망 9명, 부상 5명, 단순연기흡입 13명, 재산피해 8,000만원

- 소파·의자는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 방염물품 적용

■ 현 행

-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소파·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
- (방염대상물품) 커튼류, 카페트, 전시용 합판, 압막·무대막 등

■ 개 선

-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의자에 대하여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 (신설 방염대상물품) 가구류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 시 행 일

- 차관 및 국무회의 상정('12.12.28)후 법령 공포('13.1월중)

6. 119와 1339 업무통합으로 인한 신고번호 단일화(구급과)

■ 추진배경

-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시(B.H., '11.4.11)
- B.H. 고용복지수석 회의('11.11.16) 1339업무 119로 통합결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2.3.21)→시행('12.6.22)

■ 현 행

- '12.6.22일자로 119와 1339업무를 통합하여 질병상담, 병·의원 안내 업무 및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 국민들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하여 '13.6.21일(1년간)까지 '1339' 번호를 폐지 '119' 로 통합
* 서울 : 1339 신고 178,943건(83%), 119 신고 36,007건(17%)

합계/내용	병원·약국 안내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	의료 지도	전원안내 (병원→병원)	구급차 출동	기타
214,950	112,385	32,136	48,087	6,857	447	373	14,665
100%	52.28%	14.95%	22.37%	3.19%	0.21%	0.18%	6.82%

■ 개 선

- 1339번호 폐지('13.6)에 따른 119신고처리 능력 강화
 - * (13년) 1차 수보대의 상담·안내 처리능력 향상(콜 폭주 대비)
 - * (14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수보대 및 전문인력 보강(10% 이상)
- 상담, 안내 및 응급처치 지도 등 상황요원 전문성 향상
- 응급상황관제사(EMD) 교육과정 개발 및 인증(자격)제 추진
 - * (13년) 응급상황관제사 교육과정 개발, (14년) 제도화 추진

■ 향후계획

- 119신고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대국민 홍보 및 수보시스템 정비

7-①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확충 (정보화)

■ 추진배경

- 스마트폰용 재난알리미 '앱' 의 재난문자 수신지역 설정방식 불편 및 설치 저조에 따라 개선 및 집중 홍보 필요
- 재난발생을 인지한 기관의 내부 상황전파 및 사고수습 등으로유관기관, 국민들에게 상황전파가 지연 또는 누락 발생

■ 현 황

- 재난문자 수신지역(3개)을 이용자가 직접 변경 불편 등

<p>■ 43개 기관 223종의 재난관리정보를 연계한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활용 미흡(중앙, 지자체, 유관기관)</p> <p>* '12년 평균 활용도 : 17%</p> <p>〈'12년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 현황〉</p>	<p>■ 시도, 시군구 단위로 3개 지역 설정하게 되어 있어 이동 시 변경 불편</p> <p>■ 재난알리미 '앱' 설치 저조</p> <p>* 12.22일 현재 99,370명 설치(스마트폰 가입자 3천1백만명의 0.3%)</p> <p>〈'12년 재난알리미 '앱' 현황〉</p>
--	---

- 순환정전, 원전사고 등 위험발생시 자체 상황보고 및 사고수습에 급급하여 상황전파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발생

정책정보

■ 개 선

- 재난알리미 '앱' 을 업그레이드하여 '12.12.3일 출시, 달라진 점을 '13년에 집중 홍보를 통해 설치자 3만명 목표 달성
* '12년 개선 : 기지국 위치기준으로 재난문자 전송, 수신한 재난문자를 SNS·SMS) 로 전파 등
- 기관별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재난발생 즉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자동 상황전파를 위한 표준연계모듈 개발·보급

■ 향후계획

- '앱' 개선사항(3개 수신지역 설정 → 기지국 위치기반, 수신지역 변경 없이 어디서나 수신 가능) 기획 홍보, 순회교육 등 실시('13년 중)
* '13.1.1일부터 새로 제조되는 4G폰에는 재난문자 수신기능(H/W) 및 '13.6월부터 기 출시된 3G에 재난알리미 '앱' (S/W) 기본 탑재(방재대책과 주관)
- 자동 상황전파 표준연계모듈 우선 보급(한전, 한수원) 및 적용대상 기관 지속 확대('13년 ~)

7-②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시범 확산 (정보화담당관실)

■ 추진배경

-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영상·문자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한 통신이 일상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의한 119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존 119 음성신고체계의 개선 필요
- 음성에 의한 신고가 어려운 장애인과 외국인은 물론, 일반인도 구조·구급상황에 따라 영상·문자 등을 활용한 신고체계 필요

■ 현 행

- 119신고서비스는 음성통화만 가능
 -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신고 불가
 -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의 긴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119 신고 불가

■ 개 선

- 119다매체(영상, SMS, MMS) 신고시스템 전국 구축
 - SKT(3G, LTE 일부), KT(3G), LGU+(3G)에 대한 영상 신고서비스 제공
* 일부기종 서비스 제한(제조사 및 이동사 사정에 의한 제한)
-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다 신속한 현장대응체계구축
 - 행안부 승강기 정보시스템 및 중기청 전통시장안전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재난 사고 발생 시 현장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정확하게 재난 현장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향후계획

-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시범운영 및 안정화 : '13.1~2월
-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 '13.3 ~

8-③ 4G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 (방재대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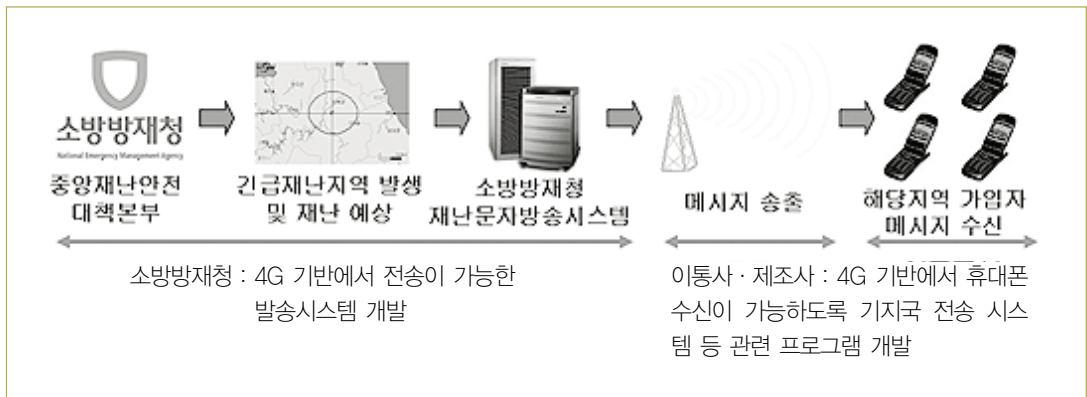
■ 추진배경

- '13. 1. 1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2.2.22)에따라 CBS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개선

■ 현행

- '05. 5월부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CBS)를 실시하고 있으나, '07년이후 출시된 3G, 4G 휴대폰에는 CBS 기능이 누락되어 수신불가
 - 3G 휴대폰은 배터리 소모, 단말기 오작동등의 문제로 CBS 기능 구현 불가
- 소방방재청과 이동통신시간 4G 휴대폰 CBS 송출시스템 구축 완료('12.9.13~12.12)

《CBS 전달 체계도》



■ 개선

- '13.1.1일 이후 신규출시모델 4G 휴대폰은 제조사 CBS 기능 탑재
- '13.1.1일 이전 기 개발 출시된 모델 4G 휴대폰 제조사 “재난알리미” 아이콘 화면 탑재

■ 향후계획

- 4G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실시 : '13.1월~

방재정보광장

정 책 정 보

9. 생활형 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신설

■ 추진배경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설
 - 생활형 숙박시설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내에서 이루어져 화재위험성 증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

■ 현 행

- 특정소방대상물의 숙박시설에 생활형 숙박시설 미적용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없음
 -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과 관광숙박 시설(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등)

■ 개 선

- 특정소방대상물의 숙박시설 분류 체계 개선 및 생활형 숙박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
 - (숙박시설) 일반형 숙박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시 행 일

- 차관 및 국무회의 상정(12.12.28)후 법령 공포(13.1월중)

10.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제도 개선

■ 추진배경

-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 (나이제한 헌법 불합치 선고)
-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여 고졸자 채용확대 정부정책에 기여

■ 주요 내용

-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 개편(필수 5 → 필수 3, 선택 2)

구분	과목
현행	(필수)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개정(안)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상향(30세→40세)

구분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현행	소방간부후보생	21세 이상 30세 이하	
	소방장·소방교		20세 이상 35세 이하
	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이하
개정(안)	소방간부후보생	21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장·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21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 시행일

- '13.01.01부터 시행, 다만 응시연령 완화 조항은 '12.10.19 공고 및 '13.01.12 실시하는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적용

11. 주유소내 전기차량 충전설비 설치 허용(방호조사과)

■ 추진배경

- 전기자동차 대중화 및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 전국 639개소(급속 62, 완속 577)
- 도시구조상 별도의 장소에 전기충전설비를 갖춘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주유소에 전기충전설비를 병설하여 설치비용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현행

- 주유소의 허가조건은 위험물의 주유행위를 전제로 설정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기, 완속충전 시 장기 주차 차량제어 및 관리를 위한 주차시스템을 설치할 근거가 없음

■ 개선

- 전기차 충전기 및 차량 관리를 위한 주차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정 책 정 보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을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추진일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13. 1월

1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제도 도입(구조과)

■ 추진배경

- 국정과제의 세부과제『통합형 긴급구조 대응체계 개선방안 강구』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 평가를 통한 재난발생 시 필요자원의 효율적 동원, 현장안전사고 방지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확립
 - 대규모 재난사고 수습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구조대 등이 참여하여 구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 빈번(천안함피폭 현장 등)

■ 주요내용

- 평가주기 : 매년
- 평가주체 및 대상기관
 - 중앙/소방본부(시·도)/소방서 단위로 구분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중앙단위	소방본부(시·도) 단위	소방서 단위
대 상	소방방재청 (1개)	소방본부(17개)	소방서(194개)
	중앙부처, 공공기관·단체의 본부	지방청, 공공기관 지역본부 등	공공기관·단체 지사 등
개 수	27	270여 개	1,300여 개

※단위별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 약 1,600개 기관·단체

- 평가항목 :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인력, 시설·장비, 물자, 운영체계)

■ 추진일정

- 기본계획(12월) ⇒ 시·도 의견수렴(공청회 등, '13. 1월) ⇒ 시범운영('13. 2월) ⇒ 평가지침 확정 및 시달('13. 2월) ⇒ 전국적 실시('13. 4월)


13. 유사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체험관 건립 (생활안전과)

■ 추진배경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의 증가 및 고층화·지하화·대형화 등으로 인한 생활주변 안전사고 위험의 증가
- '11.3.22(국무회의) 유치원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주5일제 수업 자율시행관련 국무회의시('11.7.21) 행안부장관 VIP보고:소방체험관 확대

■ 현행


- 수도권 및 영남권에 소방체험관 운영 중
 -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03. 3.6개관, 서울어린이 대공원 내)

	건물규모	지하1/지상3층 연면적 5,742㎡ 부지 6,124㎡
	주요시설	지진 폭풍우 피난체험 등 20개 코너
	체험시간/수용인원	1회당 약 2시간, 170여명, 일일 3회 운영(총 520명) ※매주 화·목요일 직장인을 위한 야간운영 1회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08. 9. 26 준공 '08. 12. 29 개관)

	건물규모	지하1/지상2층 연면적 5,833㎡ 부지 14,469㎡
	주요시설	지하철·생활·방재미래 등 3개 전시관
	체험시간/수용인원	1회당 약 2시간, 20여명, 일일 18회 운영(총 360명)

-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 ('10. 4. 30 준공, '10. 5. 25개관, 보라매공원 내)

	건물규모	지상3/지하1층 연면적 8,020.77㎡
	주요시설	코스형식의 연속적 재난시뮬레이션 체험
	체험시간/수용인원	1회당 약 2시간, 60여명, 일일 4회 운영(총 240명)

■ 개선

- 호남권 소방체험관 운영으로 체험기회 확대
 - 호남권 체험인원 증가로 안전교육에 대한 욕구 해소에 기여
 - 유아전용 체험시설(어린이 안전마을) 설치로 다른 곳과 차별화

■ 향후계획

- 충청권(충남 천안) 및 부산에 소방체험관 건립
 - 2014년부터 보다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가능

'13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가동

〈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우기전 조기 마무리를 위해 11월말부터「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본 추진단은 소방방재청이 시·도, 시·군·구를 총괄 지휘하면서 금년 11월말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 운영되며
 - 각 기관의 책임있는 간부(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가 단장이되어 4개반 16명이 주간회의 등 정례회의를 통해 총 731개 사업장에 대한 추진진도를 관리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 현재, 국회에 제출된 '13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12년대비 222억원이 증액된 6,179억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794억원(자연재해위험지구 3,207, 서민밀집위험지역 400,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187)
 - 소하천 정비사업 2,385억원이다
- 재해예방사업은 다른 SOC 사업과는 달리 여름철 재해와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 내년 우기전인 6월말까지 60%이상 주요공정을 완공하는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 담당자와 맨투맨 연결하면서 주간단위 회의, 월간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13년 사업장별 지방비 확보, 설계·보상, 공사발주 등을 관리하며
 - 6월말까지 조기완공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추진공정상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이 목표가 달성되면 여름철 우기 전에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1년 앞당길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 · 운영계획

'13년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조기추진단 구성 · 운영 계획임

■ 추진배경

- '13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으로 우기전 완공을 유도하여, 1년 앞당긴 사업효과 발휘
-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확보,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관리

⇒「재해예방사업 2월말 90% 발주, 우기전 60%이상 완공」을 목표로 설정하여 중앙, 지자체별 조기추진단 가동을 활성화

■ '13년 사업규모

- 예산/사업량 : 11,284억원(국비 6,179, 지방비 5,105)/731개지구
 - 예산확보 노력으로 '12년(국비 5,957억원)대비 222억원 증
 - ※ '13년 정부예산안 긴축편성, 소방방재청 총예산 전년 대비 감액(0.8%)되었음에도 재해예방사업은 3.7% 증액, 사업의 중요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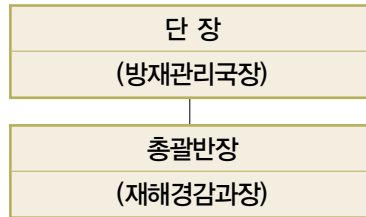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분	'13년 예산규모			사업량 (개소)	비고 ('12년대비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합계	11,284	6,179	5,105	731	증 222
재해위험	5,344	3,207	2,137	217	증 89
서민밀집	800	400	400	109	증 -
급경사지	374	187	187	47	증 17
소하천	4,766	2,385	2,381	358	증 116

정 책 정 보

■ 중앙 조기추진단 구성·운영(안)

- 운영기간 : 2012. 11. 28 ~ 2013. 6. 30
- 추진단 구성 : 방재관리국장(단장), 4개반 16명



사업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지구 • 서민밀집위험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이상권 서기관 • 반원: 김경찬, 현종일, 이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하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박용중 사무관 • 반원: 강 철, 박정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 반원: 안동희, 박조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정우철 사무관
기술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등 재해예방사업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김윤태 연구관 • 반원: 방재연구원(1), 민간전문가(2)

• 주요임무

《사업지원반》

- '1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파악·관리
 - 예산편성, 설계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착공, 사업추진 등
- 주간회의, 월간회의 등 필요시 각종 점검회의 개최
- 필요시 분기별 현장점검 등 조기추진 대책강구 등

《기술지원반》

- 재해예방사업 설계검토 등 기술분야 자문
- 현장 시공·관리 실태 지도, 부실시공 방지 추진 등
 - ※ 지자체는 우리청 계획에 따라 시·도(단장:국장), 시·군·구(단장:부단체장)별로 구성·운영

■ 향후계획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 '13. 7월



정
책
정
보

도심지 기습폭설에 따른 교통마비 대비, 현장 대응훈련 실시

〈소방방재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청장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서는 1.15일, 남부지방의 기습폭설로 인한 도심지 차량통행 마비 및 교통사고를 가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한 합동훈련에는 대구경찰청, 대구소방본부, 수성구청, 501여단, 수성경찰서, 수성소방서, 한국도로공사경북본부, 건설기계협회대구지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부산·울산·대구·광주·경남 등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도 참관 하였다.
- 이번 훈련은 지난 12.28일 대구 등 남부지방에 60년 만에 내린 기습폭설로 도심지 교통대란과 크고 작은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를 거울삼아 유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의 현실성을 높였으며
 -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한 폭설발생을 가정한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을 통해 제설작업과 구조 활동을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민·관·군 긴급응원체계 및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 능력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 모든 국민들이 폭설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기상상황과 대처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내 집앞 눈치우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폭설시 도심지 교통소통대응 훈련 시행계획

■ 훈련개요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재난대비훈련)
- 훈련일시 : 2013. 1. 15.(화) 15:00~15:45
- 훈련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솔정고개)
- 참여기관 : 10개 기관
 - 훈련주최 : 소방방재청
 - 훈련주관 : 대구광역시

방
재
정
보
광
장

정책정보

- 지원기관 : 대구경찰청, 대구소방본부, 수성구청, 501여단, 수성경찰서, 수성소방서, 도공경북본부, 건설기계협회대구지회

■ 주요내용

- (도로통제) 기습 폭설에 따른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실시
- (재난홍보) 차량 우회 및 월동장구 장착 홍보 실시
- (도로제설) 제설장비·인력의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제설작업 실시
- (응급구조)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 응급 구조 및 후송 실시
- (응원체계) 장비·자재 응원 및 민·관·군 협조를 통한 제설작업 실시

■ 상황단계별 세부 훈련 계획

< 강설 예보 단계 >

- 제설 장비·인력 취약구간 전진 배치

◆ 훈련 현장 조치 사항

- ▶ 현장훈련 구간(상주방면) 전면 교통 차단 및 우회조치 ⇒ 수성경찰서
- ▶ 제설 장비·인력 전진배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 강설 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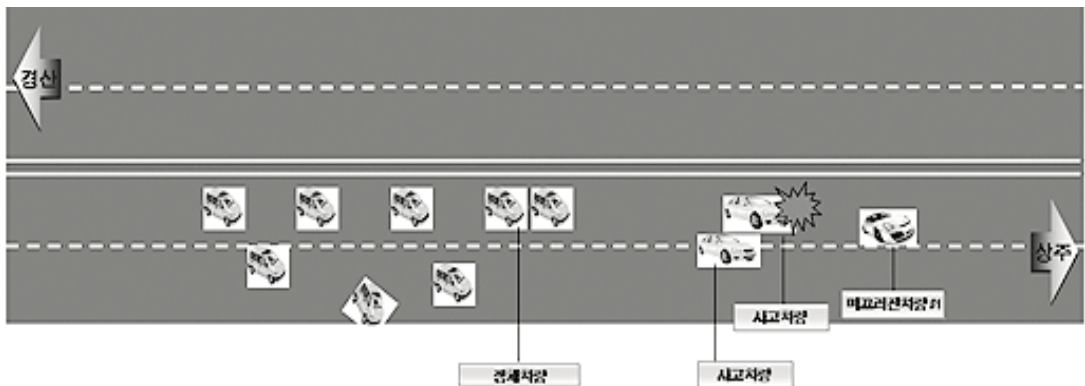
- 강설시작에 따른 제설제 살포 작업 실시

◆ 훈련 현장 조치 사항

- ▶ 살포기 1대 현장 투입 및 훈련장소 통과 ⇒ 수성구청

< 교통사고 발생 >

- 소형차량 및 트럭 눈길 미끄럼 및 후미 차량 연쇄 추돌사고
- ※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 및 사고지점 후방 차량정체 발생



◆ 훈련 현장 조치 사항

- ▶ 소형차량 및 트럭 등 48대 현장 투입 ⇒ 대구광역시

- 수성소방서는 사고차량으로부터 눈길 교통사고 접수

〈 현장 확인 및 상황 전파 〉

- 수성소방서, 눈길 교통사고 상황을 수성구청 재난상황실과 수성경찰서로 전파
 - (수성소방서) 119구급팀 현장 급파
 - (수성구청 재난상황실) 인근에서 제설작업 중인 작업반에 상황파악 지시
 - (수성경찰서) 순찰 중인 교통순찰팀에게 상황파악 지시
- 눈길 미끄러짐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재난상황 보고
 - 중상 및 경상 등 부상자 발생, 차량 파손 및 정체 차량 발생
 - 연호사거리~경상방향 450m 정체구간 발생

◆ 훈련 현장 조치 사항

- 119구급차 현장 투입 및 부상자 파악 ⇒ 수성소방서
- 제설장비 현장 투입 및 정체구간, 우회도로 파악 ⇒ 수성구청
- 경찰차 현장 투입 및 사고·정지차량 파악 ⇒ 수성경찰서

- 수성구 재난상황실은 재난상황 접수 후 긴급대책 마련
 - 보건소, 수성소방서, 관할구역의 병원 등에 구급차량 지원 요청
 - 대구 재난상황실, 군부대, 도로공사, 민간단체에 인력·장비 지원 요청

〈 재난상황 긴급대응 〉

- 대구소방본부 구조헬기, 수성소방서 구급차량 투입 및 후송
- 수성구청 재난상황실 견인장비, 보건소 구급차량, 제설장비 추가 투입

◆ 훈련 현장 조치 사항

- 구조헬기 현장 투입 및 부상자 후송 ⇒ 대구소방본부
- 구급차 현장 투입 및 부상자 후송 ⇒ 수성보건소 등
- 제설장비 및 긴급수송 버스 현장 투입 ⇒ 수성구청

〈 유관기관 협조체제 가동 〉

- 501부대, 도로공사, 건설기계협회 등 제설장비 지원

◆ 도심지폭설대비 대응훈련 사진 ◆



방재정보광장